

배포 일시	2022. 11. 28.(월)		
담당 부서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책임자	과 장 박진홍 (044-201-4016)
		담당자	사무관 정일웅 (044-201-4018)
			사무관 유찬호 (044-201-3998)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 11월 28일 17시 기준 상황

□ 국토교통부 - 화물연대 면담(11.28. 14:00)

- 국토교통부는 집단운송거부 사태의 원만한 해결과 국가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오늘 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와 면담
- 이 자리에서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영구 연장, 품목 확대’ 요구 등 기존 입장을 고수했으나, 국토교통부는 ‘3년 일몰 연장, 품목 확대불가’라는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전달하고, 경제위기 상황 해소를 위해 화물연대가 조속히 현장에 복귀할 것을 요청

□ 집단운송거부 동향

- 금일 약 7,080명(전체 조합원의 32%)이 18개 지역 186개소에서 집회 및 대기하였으며, 이는 전날 대비 약 3,200명 증가한 수치
- 단양 시멘트공장, 판교 송유관센터 등에서 일부 운송방해 행위가 신고되었으나, 경찰에서 즉시 조치

□ 물류 및 산업 동향

- (항만)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 감소(평시대비 33%)가 지속되고 있어 수출입 및 환적화물 처리에 차질이 누적 중

< 컨테이너 장치율 및 반출입량 추이 >

구분	평시 (22.10)	11.24. 10시	11.24. 17시	11.25. 10시	11.25. 17시	11.26. 10시	11.26. 17시	11.27. 10시	11.27. 17시	11.28. 10시	11.28. 17시
장치율 (평시대비 %)	64.5	63.9	64.2	63.5	63.9	63.3	63.7	62.6	62.4	62.4	62.4
컨테이너 반출입량 (TEU, 평시대비 %)	36,655	69,976 (190%)	14,695 (40%)	18,086 (49%)	10,451 (28%)	13,084 (35%)	6,929 (19%)	6,208 (17%)	2,788 (8%)	7,587 (21%)	11,928 (33%)

- 특히 컨테이너 반출입량 감소가 큰 광양항, 평택·당진항, 울산항의 경우, 일부 재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시 대비 감소율이 매우 심각한 상황

< 광양, 평택·당진, 울산항 컨테이너 반출입량 추이, 단위: TEU >

구분	평시 (22.10)	11.24. 10시	11.24. 17시	11.25. 10시	11.25. 17시	11.26. 10시	11.26. 17시	11.27. 10시	11.27. 17시	11.28. 10시	11.28. 17시
광양항	4,014	6,144	22	0	38	0	0	0	0	2	106
평택·당진항	1,511	1,954	43	105	34	83	43	74	0	8	273
울산항	894	684	8	0	2	0	0	0	0	8	16

- (시멘트) 시멘트는 평시대비 11%(2.2만t)가 운송되었으며, 이로 인해 레미콘은 평시대비 15%만 생산

- 20개 건설사, 전국 912개 건설현장 중 둔촌주공을 포함한 508개 (56%) 현장에서 11.25일부터 레미콘 타설 중단, 그 외 공정은 공사 중

* 한국시멘트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등 5개 단체 집단운송거부 중단 촉구 성명서 발표(11.28)

□ 주요 조치사항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시 30분부터 백브리핑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즉시 지체없이 집행할 것”이라는 입장 표명
-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13시 건설산업 간담회(여의도), 14시 국회 레미콘업계 위기점검 간담회(국회)에 참석하여 건설업계 피해상황을 점검

-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9시 30분부터 서울 화련회관에서 화물운송 업계 대책 간담회를 개최하여 화물운송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임을 밝힘
- 위기대응 발령단계를 '심각(Red)'으로 격상(11.28. 9:00~)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11.28. 10:00) 및 운영 중
-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력(기동대·교통경찰·신속대응팀 등)을 배치하여 운송 방해행위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운행차량 보호조치 등을 하고 있으며 군위탁 컨테이너 수송 차량 등 운송수단 지속 투입 중
 - 긴급 물량은 경찰의 보호 아래 반출하고 있고, 기업별 자체 운송인력 투입, 정부의 비상수송대책 등을 통해 물류피해 최소화 노력 중

※ 운송 거부자 신고 안내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거부하는 자에 대해 각 지자체에 적극 신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송 거부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신고센터 연락처: 붙임5)



붙임 1

항만별 장치율, 반출입량 동향(11.28. 17:00 기준)

(단위 : TEU, %)

구분	화물 장치율						일일 반출입량						
	장치능력 (A)	장치량		장치율(%)			금일 10시17시	금일 10시17시	금일 10시17시	전일 10시17시	평시("22.10월 동시간대) 반출입량		
		금일 17시 (B)	전일 (17시)	금일 17시 (B/A)	전일 (17시)	평시 (22.10)	반입 (C)	반출 (D)	반출입 (C+D)	반출입 (E)	반입	반출	합계
합 계	941,283	587,173	587,625	62.4	62.4	64.5	6,230	5,698	11,928	2,788	19,448	17,207	36,655
부산항	592,335	390,288	390,274	65.9	65.9	68	4,820	4,021	8,841	2,542	10,984	9,408	20,392
인천항	112,921	83,478	82,898	73.9	73.4	76.3	1,146	1,302	2,448	34	4,339	3,787	8,126
광양항	110,856	68,153	68,865	61.5	62.1	61.4	53	53	106	0	2,260	2,365	4,625
평택· 당진항	39,281	18,676	18,999	47.5	48.4	59.3	95	178	273	0	860	746	1,606
울산항	29,464	14,416	14,483	48.9	49.2	55	8	8	16	0	614	514	1,128
군산항	8,006	1,182	1,194	14.8	14.9	13.3	27	39	66	156	80	78	158
마산항	3,700	201	190	5.4	5.1	5	0	6	6	30	44	29	73
대산항	8,255	2,066	2,066	25.1	25.1	26	0	0	0	0	87	82	169
포항항	24,041	7,221	7,219	30.0	30.0	26	19	17	36	0	38	57	95
동해항	1,150	350	350	30.4	30.4	26	0	0	0	0	25	25	50
목포항	8,022	479	438	6	5.5	5	55	70	125	26	106.8	104.8	211.6
경인항	3,252	663	649	20.3	19.9	22	7	4	11	0	10	11	21

붙임 2

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환불 계획

□ 통행료 면제

- (면제기간) '22. 11. 24(목) 00:00 ~ 집단운송거부 종료 시 까지
- (면제구간) 고속도로 **쏘구간**(민자고속도로 포함, 지자체 민자도로 제외)
- (대상차량) 국토부 지정 **대체수송차량**으로
식별표지 및 **통행료 면제확인증**을 발급받은 차량
- (면제방법) **하이패스**는 정상 납부 후 **사후 환불**
* (선불카드) 사후 충전, (후불카드) 카드사 미청구
일반차로는 **즉시 면제** (식별표지 부착, 면제확인증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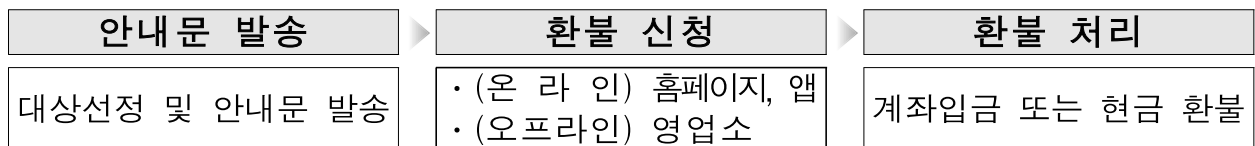
※ 일반차로 이용차량은 외부에서 대체수송차량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전면 유리창의 좌측 하단에 **식별표지**를 부착하고, **통행료 면제 확인증**을 요금소 직원에게 제시

□ 식별표지 및 면제 확인증 발급

- (발급장소) 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 **쏘 영업소** (367개소)
- (발급시간) **09:00 ~ 18:00** (주말·공휴일 포함)
- (발급방법) **자동차등록증** 및 **신분증** 지참 영업소(사무실) 방문
대상차량 확인 후 식별표지 교부(전산등록·출력)

□ 통행료 환불

- (환불대상) 식별표지 발급 차량 중 기간 내 정상납부 이용차량
* 식별표지 발급 이전 통행료는 소급 적용
- (환불시기) 집단운송거부 종료 후 안내문 발송 시 별도 안내
- (환불절차)



□ **문의처** : 한국도로공사 1588-2504, 중앙수송대책본부 044-201-4802~03

붙임 3**통행료 면제 식별표지 및 면제확인증 서식**

- 식별표지** : 차량 전면 유리창의 좌측 하단에 부착

No. 예)1-23 (차량부착/게시용)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대상차량

- **사용기간** : 2022. 11. 24. 00:00 ~ 정상화 시까지
- **차량번호** : _____

위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상임을 확인함

국토교통부장관 (인)

- 면제확인증** : 일반차로 이용차량은 통행료 면제 확인증을 제시

No.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확인증

- **사용기간** : 2022. 11. 24. 00:00 ~ 정상화 시까지
- **차량번호** : _____
- **면제구간** : 모든 고속도로(재정·민자 고속도로)
- **이용방법** : 요금소 부스 제출 후 통과

위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상임을 확인함

국토교통부장관 (인)

□ 허가 기준

- (대상) 최대 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트럭)** 및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
- (허가기간) 허가를 받은 자가용 화물차주는 **7일('22.11.24~11.30)간 유상운송 영업**을 할 수 있고, 집단운송 거부가 장기화 될 경우에는 **별도의 방문 없이 7일 단위로 연장**
- (허가신청 기간) **'22.11.16.부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종료 시까지** 허가신청이 가능

□ 허가 절차

- (허가신청) 허가를 받으려는 운전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를 관청에 제출
- (허가증 부착) 허가를 받은 운전자는 유상운송 허가증을 관청으로부터 발급 받아 **자동차 앞면 유리창 우측상단에 허가증을 붙이고 운행.**

□ 허가 혜택

- (통행료 면제)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 화물자동차 중 **10톤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
*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상 아님.
- (비상수송) 허가를 받은 운전자는 국토부 비상대책본부를 통해서 **긴급물량을 배차** 가능
- 비상수송 물량이 있는 경우 차주에게 순차적 연락 예정

붙임 5

운송거부자 신고 담당자 연락처

기관명	성명	사무실 연락처	e-mail주소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최용민 주무관	044-201-4018	skrkwk11@korea.kr
서울특별시 물류정책과	박진원 주무관	02-2133-4094	freedom@seoul.go.kr
경기도 물류항만과	강동주 주무관	031-8008-3864	rallyxyzgx57@gg.go.kr
부산광역시 물류정책과	김태경 주무관	051-888-7632	ktkim97@korea.kr
인천광역시 물류정책과	홍형표 주무관	032-440-3832	0326hhp@korea.kr
대구광역시 택시물류과	이미림 주무관	053-803-4041	yml4832@korea.kr
광주광역시 교통정책과	김 건 주무관	062-613-4092	gun1424@korea.kr
울산광역시 교통기획과	김태자 주무관	052-229-4114	taeyeowoo@korea.kr
대전광역시 운송주차과	박준상 주무관	042-270-5832	foolmoon@korea.kr
충청남도 교통정책과	송창훈 주무관	041-635-2844	chsong1224@korea.kr
충청북도 교통정책과	장은수 주무관	043-220-4265	eielectro@korea.kr
전라남도 도로교통과	강성진 주무관	061-286-7461	gsj83@korea.kr
전라북도 교통정책과	김대환 주무관	063-280-3621	yotta@korea.kr
경상남도 교통정책과	김재훈 주무관	055-211-4144	senatus@korea.kr
경상북도 교통정책과	이희천 주무관	054-880-2667	yi2000@korea.kr
강원도 교통과	함석영 주무관	033-249-3544	hsy3415@korea.kr
제주도 교통정책과	김보윤 주무관	064-710-2465	kbv6089@korea.kr